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기번호	117824			
등록번호	130111-1178242			
상 호 주식회사 이원평택에너지 (E1 Pyeongtaek Energy Corporation)				
본 점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구장길 106				
공고방법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1주의 금액 금 5,000 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0 주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 및 각각의		자본금의 액	변 경 연 월 일 등 기 연 월 일
발행주식의 보통주식 발행주식의		20,000 주 20,000 주 23,319 주	금 100,000,000 원	· · · · · · · · · · · · · · · · · · ·
보통주식 발행주식의 보통주식 제1종우선 ³	총수	23,319 주 358,239 주 328,239 주 30,000 주	금 116,595,000 원 금 1,791,195,000 원	2024.06.26 등기 2024.09.06 변경 2024.09.19 등기
목 적 1. 자회사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지주사업 1. 자회사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 경영지도, 정리, 육성하는 지주사업 <2024.06.14 변경 2024.06.26 등기> 2.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3.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3. 자회사 등(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말함)에 대한 자금 및 업무지원 사업 <2024.06.14 변경 2024.06.26 등기>				
4.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사업<2024.06.14 추가2024.06.26 등기>5. 자회사 등과 상품 또는 용역의 공동개발 판매 및 설비, 전산시스템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사업<2024.06.14 추가2024.06.26 등기>6.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라이선스업<2024.06.14 추가2024.06.26 등기>7. 시스템 통합 구축 서비스의 판매업<2024.06.14 추가2024.06.26 등기>				
8. 부동산	동합 구축 서비스의 매매 및 임대업 용, 기타 부동산 개통		<2024.06.14 추가 <2024.06.14 추가 <2024.06.14 추가	2024.06.26 등기> 2024.06.26 등기> 2024.06.26 등기>

10. 전력설비, 차량, 장비의 관리, 운전 및 임대사업 <2024.06.14 추가 2024.06.26 등기>

11. 건설관리 및 설비관련 서비스업 <2024.06.14 추가

2024.06.26 등기>

12.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자금차입 또는 채무보증 기타 다른 활동

<2024.06.14 추가 2024.06.26 등기>

13. 기타 위 목적의 달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 부수되거나 도움이 되는 모든 활동

<2024.06.14 추가 2024.06.26 등기>

임원에 관한 사항

사내이사 조문기 69022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156번길 12, 1508호(정자동, 타임 버릿지)

사내이사 조문기 690223-*****

2024 년 06 월 14 일 주소삭제 2024 년 06 월 26 일 등기

사내이사 박정규 810630-*****

2024 년 06 월 14 일 취임 2024 년 06 월 26 일 등기

사내이사 박주인 820324-*****

2024 년 06 월 14 일 취임 2024 년 06 월 26 일 등기

2024 년 09 월 06 일 사임 2024 년 09 월 19 일 등기

사내이사 이규돈 861112-*****

2024 년 06 월 14 일 취임 2024 년 06 월 26 일 등기

2024 년 09 월 06 일 사임 2024 년 09 월 19 일 등기

사내이사 정택근 781030-*****

2024 년 06 월 14 일 취임 2024 년 06 월 26 일 등기

감사 이건주 710826-*****

2024 년 06 월 14 일 취임 2024 년 06 월 26 일 등기

대표이사 조문기 69022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156번길 12, 1508호(정자동, 타임 브릿지)

2024 년 06 월 14 일 취임 2024 년 06 월 26 일 등기

기타비상무이사 이헌 750111-*****

2024 년 09 월 06 일 취임 2024 년 09 월 19 일 등기

기타비상무이사 유상연 800628-*****

2024 년 09 월 06 일 취임 2024 년 09 월 19 일 등기

종류주식의 내용

제1종우선주식

- (1) 의결권. 일(1)주당 일(1)개의 의결권을 부여한다.
- (2)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i) 제1종 우선주식은 비누적적, 참가적 우선주식으로 일(1)주당 발행가액 기준 연 구퍼센트 (9%)의 배당을 비누적적으로 보통주식에 앞서 우선 배당 한다. 명확히 하면, 제1종 우선주식 은 제2종 우선주식 및 제3종 우선주식과 같은 순위로 배당을 받고, 보통주식보다 우선하여 배 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1종 우선주식, 제2종 우선주식 및 제3종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배당 (제2종 우선주식 및 제3종 우선주식의 경우 누적된 미지급 우선배당금을 포함함)이 이루어지 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당을 할 수 없다.
- (ii) 제1종 우선주식, 제2종 우선주식 및 제3종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이 이루어진 후 보 통주식에 대하여 배당을 할 경우,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 제1종 우선주식은 보통주식의 주당

117824

배당액이 제1종 우선주식의 주당 우선배당액을 초과할 경우 보통주식과 동일한 주당 배당액이 되도록 그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다.

- (iii) 주식배당의 경우 종류주식과 보통주식을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우선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 (iv)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제1종 우선주식의 인수인은 제1종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발행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 및 배당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일(1)개월 이내에 제1종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3)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 (i) 발행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제2종 우선주식 및 제3종 우선주식 의 누적된 미지급 우선배당금을 우선하여 분배한다.
- (ii) (i)호에 따라 누적된 미지급 우선배당금을 우선 분배한 후, 제1종 우선주식에 대하여 내부수익률을 구퍼센트(9%)로 만드는 금액{단, 내부수익률 계산시 기배당 혹은 기지급금액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실제 수령 시점에 미리 분배를 받은 것으로 보아 현금유입으로 계산 }을 보통주식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분배하고, 제2종 우선주식 및 제3종 우선주식의 분배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주식의 (i)호의 분배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분배금액과 같은 순위로 분배한 다.
- (iii) (ii)호에 따라 제1종 우선주식, 제2종 우선주식 및 제3종 우선주식에 대해 우선 분배한 후, 보통주식에 대한 잔여재산분배를 한다. 그러한 분배에 대하여 보통주식의 주당 분배금액이 제1종 우선주식의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1종 우선주식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주당 분배금액이 되도록 그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참가하여 분배를 받는다

채

2024 년 09 월 06 일 설정 2024 년 09 월 19 일 등기

전 환 사

제1회 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전환사채의 총액 금146,000,000,000원
- 1. 각 전환사채의 금액 금146,000,000,000원권 1종
- 1.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전액
- 1.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 1. 전환의 조건
 - 1. 전환비율. 사채권면금액의 일백퍼센트(100%)
 - 2.전환가액. 일(1)주당 금 [1,000,000]원으로 하되 전환가액 조정 시 조정된 가액으로 한다.
 - 3.전환주식수. 사채권면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로 한다. 단, 일(1)주 미만의 단주는 발행회사가 전환청구일의 다음 첫번째 영업일에 현금으로 계산하여 사채권자에게 지급한다.
 - 4.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사채의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은 발행회사의 누적적 비참가적 우선주식으로 하고, 해당 우선주식의 세부조건은 사채의 전환에 의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에 따름. 전환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아래 기재된 바에 따른다.

117824

- (i)전환청구로 발행된 주식의 교부방법: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그 주권을 교부한다 (단, 사채권자의 요청 시 주권미발행확인서 교부 등 다른 방법으로 발행 가능).
- (ii)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이익배당 등: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사채의 전환에 따라 발행회사의 사채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누적된 미지급이자 지급 의무 포함)는 소멸하고, 사채에 대하여 누적된 미지급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발행일이 속하는 영업연도에 대한 배당 시 그 금액을 우선 배당한다.
- (iii)미발행 주식의 보유: 발행회사는 전환청구기간 종료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에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 5.전환청구권 행사기간 및 조건. 대상사채가 만기에 상환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사채의 만기일(연장된 경우 연장된 만기일)의 익일에 대상사채를 제2종 우선주식으로 전환한다. 사채권자는 이를 위하여 전환권 행사를 포함한 필요 조치를 취한다.
- 6.전환 청구의 절차. 사채권자는 전환청구서에 사채권을 첨부하고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의 권면 금액, 전환청구 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발행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청구한다.
- 7.전환의 효력발생일. 전환은 대상사채의 만기일(연장된 경우 연장된 만기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전환에 의하여 교부된 주식은 전환의 효력발생일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8.전환가액의 조정. 아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각 기재된 바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조정사유가 중복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전환가액의 조정을 적용하여 중복적으로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 (i)당시의 전환가액(전환가액 조정을 하기 직전에 유효한 전환가액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보다 낮은 발행가액으로 발행회사가 유상증자를 하거나, 당시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전환가액 내지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당시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액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조정후 전환가격=[(조정전 전환가격 x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x 1주당 발행가액)] /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 (ii)주식배당 또는 준비금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증자를 통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액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X 기발행주식수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위 (i)/(ii)의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종류주식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전환조건 등을 적용하여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것을 전제로 한 보통주식 기준 총수를 의미함),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를 통해 발행되는 주식의 총수를 의미함.
- (iii)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또는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해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또는 병합 등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전환주식수가 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항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또는 병합 등 조정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 (iv)위 각 절차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발행회사는 전환권 행사 전 유.무상증자를 실시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유.무상증자가 실시되어 전환가액이 본 제8항에 따라 조정되면 액면가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유.무상증자를 실시할 수 없다.

117824

- (v)위 각 호의 사안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발생한 순서에 따라 누적하여 전환가액을 계산하여 조정하며, 전환비율 또한 이에 따라 조정한다.
- 9.증자등기. 발행회사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이(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전환청구에 의한 증자등기 신청을 한다.
-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 1. 발행증권. 제2종 우선주식(이하 본건 우선주식)
 - 2.주당 액면가액. 금 오천(5,000)원
 - 3.주당 발행가격. 대상사채의 전환가액
 - 4. 의결권. 본건 우선주식 일(1)주당 일(1)개의 의결권을 부여한다.

내에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5.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1)본건 우선주식은 누적적, 비참가적 우선주식으로, 본건 우선주식에 대하여 일(1)주당 발행가액 기준으로 연 구퍼센트(9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통주식보다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한다. 단, 본건 우선주식의 발행일이 속하는 영업연도에 대한 배당은 연 구퍼센트(9퍼센트)에 해당하는 우선 배당금액과 함께 본건 우선주식 전환 전 제1회 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에 대하여 누적된 미지급이자를 포함하여 우선 배당한다. 명확히 하면, 본건 우선주식은 제1종 우선주식 및 제3종 우선주식과 같은 순위로 배당을 받고, 보통주식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 어느 영업연도에 본건 우선주식에 대한 미지급배당금이 있을 경우 미지급배당금을 다음 배당시 제3종 우선주식과 동순위로 제1종 우선주식 및 보통주식보다 우선하여 배당한다.
- (2)본건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배당(누적된 미지급 우선배당금을 포함함)과 제1종 우선주식 및 제3종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당을 할 수 없고, 본건 우선주식, 제1종 우선주식 및 제3종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이 완료된 이후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을 진행한다.
- (3)주식배당의 경우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우선 주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4)이익배당과 관련하여,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 및 배당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일(1)개월 이
- 6.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 (1)발행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 및 제3종 우선주식의 누적된 미지급 우선배당금을 우선하여 분배한다.
- (2)(1)호에 따라 누적된 미지급 우선배당금을 우선 분배한 후, 본건 우선주식에 대하여 내부수익률을 팔점오퍼센트(8.5퍼센트)로 만드는 금액(단, 내부수익률 계산시 대상사채의 납입일로부터 계산하고, (엑스) 거래비용, 펀드관리보수, 금융수수료 등으로서 별지 에이에 명시된 금액(다만, 합리적인 조정은 당사자간 합의로 가능함)은 현금유출로 계산하며, (와이) 기배당 혹은 기지급금액등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실제 수령 시점에 미리 분배를 받은 것으로 보아 현금유입으로 계산함)을 보통주식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분배하고, 제1종 우선주식에 대해서는 아래 (3)호의 참가적분배를 제외한 분배금액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식 및 제3종 우선주식의 분배금액과 같은 순위로분배한다.
- (3)(2)호에 따라 본건 우선주식, 제1종 우선주식 및 제3종 우선주식에 대해 우선 분배한 후, 보통 주식에 대한 잔여재산분배를 한다. 그러한 분배에 대하여 보통주식의 주당 분배금액이 제1종 우선 주식의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1종 우선주식은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보통주식과 동

117824

일한 주당 분배금액이 되도록 참가하여 분배를 받는다.

7.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신주인수권 행사로 배정받는 주식은 무상증자의 경우 동종의 종류주식으로 하고, 유상증자 및 주식관련사채 발행의 경우 발행회사의 이사회가 발행하기로 한 주식 또는 주식관련사채로 한다.

1. 전환청구기간

대상사채가 만기에 상환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사채의 만기일(발행일 2024년 9월 5일로부터 5년이 되는날)(연장된 경우 연장된 만기일)의 익일에 대상사채를 제2종 우선주식으로 전환한다. 사채권자는 이를 위하여 전환권 행사를 포함한 필요 조치를 취한다.

2024 년 09 월 05 일 발행 2024 년 09 월 19 일 등기

전 환 사 채

제2회 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1. 전환사채의 총액 금94,000,000,000원
- 1. 각 전환사채의 금액 금94,000,000,000원권 1종
- 1.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전액
- 1.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 1. 전환의 조건
 - 1. 전환비율. 사채권면금액의 일백퍼센트(100%)
 - 2. 전환가액. 일(1)주당 금 [1,000,000]원으로 하되 전환가액 조정 시 조정된 가액으로 한다.
 - 3. 전환주식수. 사채권면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로 한다. 단, 일(1)주 미만의 단주는 발행회사가 전환청구일의 다음 첫번째 영업일에 현금으로 계산하여 사채권자에게 지급한다.
 - 4.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사채의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은 발행회사의 누적적 비참가적 우선주식으로 하고, 해당 우선주식의 세부조건은 사채의 전환에 의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에 따름. 전환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아래 기재된 바에 따른다.
 - (i) 전환청구로 발행된 주식의 교부방법: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그 주권을 교부한다 (단, 사채권자의 요청 시 주권미발행확인서 교부 등 다른 방법으로 발행 가능).
 - (ii)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이익배당 등: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사채의 전환에 따라 발행회사의 사채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누적된 미지급이자 지급 의무 포함)는 소멸하고, 사채에 대하여 누적된 미지급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발행일이 속하는 영업연도에 대한 배당 시 그 금액을 우선 배당한다.
 - (iii) 미발행 주식의 보유: 발행회사는 전환청구기간 종료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에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 5. 전환청구권 행사기간 및 조건. 사채가 만기에 상환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사채의 만기일 (연장된 경우 연장된 만기일)의 익일에 대상사채를 제3종 우선주식으로 전환한다. 사채권자는 이를 위하여 전환권 행사를 포함한 필요 조치를 취한다.
 - 6. 전환 청구의 절차. 사채권자는 전환청구서에 사채권을 첨부하고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의 권면금액, 전환청구 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발행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청구한다.

117824

- 7. 전환의 효력발생일. 전환은 대상사채의 만기일(연장된 경우 연장된 만기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전환에 의하여 교부된 주식은 전환의 효력발생일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8. 전환가액의 조정. 아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각 기재된 바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조정사유가 중복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전환가액의 조정을 적용하여 중복적으로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 (i) 당시의 전환가액(전환가액 조정을 하기 직전에 유효한 전환가액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보다 낮은 발행가액으로 발행회사가 유상증자를 하거나, 당시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전환가액 내지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당시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액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조정후 전환가격=[(조정전 전환가격 x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x 1주당 발행가액)] /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 (ii)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증자를 통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 액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X 기발행주식수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위 (i)/(ii)의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종류주식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전환조건 등을 적용하여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것을 전제로 한 보통주식 기준 총수를 의미함),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를 통해 발행되는 주식의 총수를 의미함.
- (iii)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또는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해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또는 병합 등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전환주식수가 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항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또는 병합 등 조정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 (iv) 위 각 절차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 액으로 한다. 발행회사는 전환권 행사 전 유.무상증자를 실시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유.무상증자가 실시되어 전환가액이 본 제8항에 따라 조정되면 액면가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유.무상증자증자를 실시할 수 없다.
- (v) 위 각 호의 사안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발생한 순서에 따라 누적하여 전환가액을 계산하여 조정하며, 전환비율 또한 이에 따라 조정한다.
- 9. 증자등기. 발행회사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이(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전환청구에 의한 증자등기 신청을 한다.
-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 1. 발행증권. 제3종 우선주식(이하 본건 우선주식)
 - 2. 주당 액면가액. 금 오천(5,000)원
 - 3. 주당 발행가격. 대상사채의 전환가액
 - 4. 의결권. 본건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 5.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1)본건 우선주식은 누적적, 비참가적 우선주식으로, 본건 우선주식에 대하여 일(1)주당 발행가액 기준으로 연 구퍼센트(9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통주식보다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한다. 단, 본건 우선주식의 발행일이 속하는 영업연도에 대한 배당은 연 구퍼센트(9퍼센트)에 해당하는 우선 배당금액과 함께 본건 우선주식 전환 전 제2회 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에 대하여 누적된 미지급이자를 포함하여 우선 배당한다. 명확히 하면, 본건 우선주식은 제1종 우선주식 및 제2종

117824

우선주식과 같은 순위로 배당을 받고, 보통주식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 어느 영 업연도에 본건 우선주식에 대한 미지급배당금이 있을 경우 미지급배당금을 다음 배당시 제2종 우 선주식과 동순위로 제1종 우선주식 및 보통주식보다 우선하여 배당한다.

- (2)본건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배당(누적된 미지급 우선배당금을 포함함)과 제1종 우선주식 및 제2종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당을 할 수 없고, 본건 우선주식, 제1종 우선주식 및 제2종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이 완료된 이후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을 진행한다.
- (3)주식배당의 경우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우선 주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 (4)이익배당과 관련하여,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 및 배당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일(1)개월 이내에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6.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 (1)발행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 및 제2종 우선주식의 누적된 미지급 우선배당금을 우선하여 분배한다.
- (2)(1)호에 따라 누적된 미지급 우선배당금을 우선 분배한 후, 본건 우선주식에 대하여 내부수익률을 구퍼센트(9퍼센트)로 만드는 금액(단, 내부수익률 계산시 대상사채의 납입일로부터 계산하고, 기배당 혹은 기지급금액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실제 수령 시점에 미리 분배를 받은 것으로 보아 현금유입으로 계산함)을 보통주식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분배하고, 제1종 우선주식에 대해서는 아래 (3)호의 참가적 분배를 제외한 분배금액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식 및 제2종 우선주식의 분배금액과 같은 순위로 분배한다.
- (3)(2)호에 따라 본건 우선주식, 제1종 우선주식 및 제2종 우선주식에 대해 우선 분배한 후, 보통 주식에 대한 잔여재산분배를 한다. 그러한 분배에 대하여 보통주식의 주당 분배금액이 제1종 우선 주식의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1종 우선주식은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보통주식과 동 일한 주당 분배금액이 되도록 참가하여 분배를 받는다.
- 7.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식의 <mark>주주가 신주인수권</mark> 행사로 배정받는 주식은 무상증 자의 경우 동종의 종류주식으로 하고, 유상증자 및 주식관련사채 발행의 경우 발행회사의 이사회 가 발행하기로 한 주식 또는 주식관련사채로 한다
- 1. 전환청구기간

사채가 만기에 상환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사채의 만기일(2024년 9월 5일로부터 5년이 되는날)(연장된 경우 연장된 만기일)의 익일에 대상사채를 제3종 우선주식으로 전환한다.

2024 년 09 월 05 일 발행 2024 년 09 월 19 일 등기

회사성립연월일

2024 년 05 월 24 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설립

2024 년 05 월 24 일 등기

-- 이 하 여 백 --

관할등기소 수원지방법원 등기국 /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수수료 700원 영수함

열 람 용

-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 *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
- *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열람일시 : 2024년09월25일 16시58분11초